

(420)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
유찬중 위원입니다.

선배·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

『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
말씀을 드립니다.

그럼 『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
례안』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하며
“통할한다”를 “총괄한다”로 하는 등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
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
것입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
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
것을 당부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